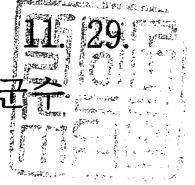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11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0018호, '19.8.6. 제정·시행)

3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2조)

- 군수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

나.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
-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
-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

4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관련부서 협의

- 조례 제정(안) 사전 검토 및 규제·법제 심사 : 법무감사실
- 부패영향평가 심사 : 법무감사실
- 성별영향분석 평가 심사 : 복지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19. 10. 18. ~ 11. 7.(20일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자치단체”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2. “적극행정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소극행정”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